

[별표 1]

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포 번 호	호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	추천기관	추천대상자
0408		새의 알(껍질이 붙지 않은 것)과 알의 노른자위(신선한 것, 건조한 것, 물에 삶았거나 찢 것, 성형한 것,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,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					
0408	1	알의 노른자위					
0408	11	건조한 것	닭 [갈 루 스 도메스티쿠스 (<i>G a l l u s domesticus</i>) 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0	4,000톤	한국식품산업협회	수입업체 또는 실수요업체
0408	19	기타	닭 [갈 루 스 도메스티쿠스 (<i>G a l l u s domesticus</i>) 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	0			

			상태의 것			
0408	9	기타				
0408	91	건조한 것	닭 [갈 루 스 도메스티쿠스 (<i>G a l l u s</i> <i>domesticus</i>) 종으로 한정 한다]의 것	0		
0408	99	기타				
		1. 닭[갈루스 도메 스티쿠스(<i>Gallus</i> <i>domesticus</i>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 의 것	0		
3502		알부민(건조물 상태 에서 계산한 유장 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)·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				
3502	1	알의 흰자위(egg albumin)				
3502	11	건조한 것	식품 원료용	0		

3502	19	기타	의 것 식품 원료용 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	0			
0811		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 (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,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했는지에 상관없다)					
0811	10	초분류 딸기		5	5,000톤	한국식품산업협회	식품제조·가공업 체 및 식품수입 판매업체 (단, 식품제 조·가공업 체 에 납품하는 경우 에 한함)
0811	90	기타	과실로 한정 한다.	5	10,000톤	한국식품산업협회	식품제조·가공업 체 및 식품수입 판매업체 (단, 식품제 조·가공업 체 에 납품하는 경우 에 한함)
1512		해바라기씨유·잇꽃유 ·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(정제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화학적으로					

		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)				
1512	1	해바라기씨유·잇꽃유와 그 분획물				
1512	19	기타				
		1. 정제유(精製油)				
		가. 해바라기씨유	0	5,000톤	한국식품산업협회	식품제조·가공업체 및 식품수입 판매업체 (단, 식품제조·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)
1803		코코아 페이스트(paste) [탈지(脫脂)한 것인지에 상관없다]				
1803	10	탈지(脫脂)하지 않은 것	0	수입 전량		
1804	00	코코아 버터(지방이나 기름)	0	수입 전량		
1805	00	코코아 가루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)	0	수입 전량		
2008		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				

		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					
2008	20	파인애플		15	8,000톤	한국식품산업협회	식품제조·가공업체 및 식품수입 판매업체 (단, 식품제조·가공업체,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)
2008	30	감귤류 과일	유자는 제외한다.	15	1,000톤	한국식품산업협회	식품제조·가공업체 및 식품수입 판매업체 (단, 식품제조·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)
2008	9	기타(혼합물을 포함하되, 소호 제2008.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)					
2008	97	혼합물					
		1. 과일 칵테일		20			
		가.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			5,500톤	한국식품산업협회	식품제조·가공업체 및 식품수입 판매업체

		나. 기타		15			(단, 식품제조·가공업체,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)
		2. 기타	과실 샐러드 및 그 밖의 과실 혼합물의 것으로 한정한다.	15			
2008	99	기타					
		6. 기타	과실로 한정한다.	15	7,500톤	한국식품산업협회	식품제조·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업체 (단, 식품제조·가공업체,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)
2009		과실·견과류 주스 (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)·채소 주스 [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 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)]					
2009	7	사과주스					
2009	79	기타		15	1,500톤	한국식품산업협회	식품제조·가공업체 및 식품수입판매업체 (단, 식품제

								조·가공업체 에 납품하는 경우 에 한함)
--	--	--	--	--	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